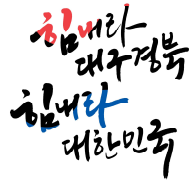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8. 27(목) 총 5매(본문4)	
담당 부서	공공주택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최아름, 사무관 박인영, 주무관 김효은 • ☎ (044) 201-4479, 4535	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2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28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재난 피해 가정까지...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

-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-

◆ 지원대상 확대

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, 교통사고유자녀가정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外 **재난 유자녀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**

◆ 지원금액 확대

- (종전)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최대 9천만 원 지원 → (개선) **2자녀 기준
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+ 자녀수(3명 ↑)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지원**

⇒ 입주희망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(읍면동사무소) 또는 시·군·구청에
상시 신청 가능(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)

□ 화재,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
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
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
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「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
처리지침」을 개정·시행하여 ‘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
사업’(이하 ‘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’)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
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, 교통사고 유자녀가정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*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**하는 사업이다.

* (선정기준) 무주택세대구성원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(3인 가구 기준 562만 원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)

**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5년까지 이자(연 1~2%)의 50% 인하

○ 특히, 이번 달(8.10)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이 대폭 강화되었다.

○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 원(아동 수 2인 기준)으로 인상되었으며,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*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.

* (예) 아동 3명 - 1억 4천만 원, 아동 4명 - 1억 6천만 원(수도권 기준)

□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재난*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**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.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* “재난”의 범위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)

- (자연재난) 태풍, 홍수, 호우, 대설,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- (사회재난)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

**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

-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‘교통사고 유자녀 가정’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② 가정위탁*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다.

- *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(18세 이상 보호종료, 연장가능)
 - ‘19년 보호조치 아동 4,125명 중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 2,412명, 가정위탁 994명 차지

-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,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.

③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%까지 허용 중이나, 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의 250%까지 확대한다.

- *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
 - (개정 전)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 가능 ⇒ (개정 후) 최대 3억 원 계약 가능

□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(읍면동사무소) 또는 시·군·구청에,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. (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)

○ 이후 해당 시·군·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,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 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*를 진행한다.

- *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(전세임대주택)

-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“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- “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객인영 사무관(☎ 044-201-44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



0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란?

사회취약계층 이동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

02 공급대상은?

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, 교통사고 유자녀가정, 재난유자녀가정, 보호종료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양육자 또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 (보호종료아동은 소득기준 미적용)

03 신청방법은?
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,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

04 지원한도액은?

보호대상 아동 수	수도권	광역시	기 타
1명	0.9억	0.7억	0.6억
2명	1.2억	0.95억	0.85억

※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아동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대출한도 상향

05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은?

임대조건

- ▶ 임대보증금 : 입주자부담 없음(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액 지원)
- ▶ 월 임대료 :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
- ※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기본 임대료의 50%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기본 임대료(1~2%) 적용

임대기간

- ▶ 임대기간 : 2년
- 만 20세 이전에는 2년 단위 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 가능하나, 만 20세 이후에는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하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기존주택유형으로 전환하여 소득 105%를 초과하지 않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계속 거주 가능



06 문의처

서울지역본부 1670-2591 | 경기지역본부 1670-2592 | 인천지역본부 1670-2593 | 부산울산지역본부 1670-2581
대구경북지역본부 1670-2582 | 광주전남지역본부 1670-2598 | 대전충남지역본부 1670-2586
강원지역본부 033)258-4127, 4104 | 충북지역본부 043)901-4564 | 전북지역본부 1670-2596
경남지역본부 1670-2583 | 제주지역본부 064)720-1036, 3938, 3936

